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295
----------	------

2025. 6. 11.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6. 2. 정구호 의원
나. 회부 일자: 2025. 6. 2. 회부
다. 상정 일자: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0. 17.) 상정,
“수정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가발구입비 지원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지원신청, 지원제한 및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암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칙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안 제3조~제7조), 환수조치(안 제8조),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을,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암환자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나 조문 체계,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6명)

※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 붙임 1.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295-1
----------	--------

제안연월일 : 2025. 10. 17.
제안자 : 총무위원장

1. 수정 이유

- 잘못된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함.

2. 수정 내용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를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수정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를 “**각 호에 모두 해당 하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3.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p>제4조(지원대상) -----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정안+수정안)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3.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첨부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 명		관 계	
	연 락 처			
신청내용	총구입비		신청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p>				
환수조치 시 안내				
<p>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p> <p>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p>				
<p>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광양시장 귀하</p>				